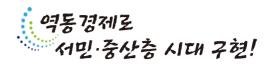
경제관계장관회의 24-15-1 (공개)



# 위메프·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

2024. 8. 7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I. 위메프·티몬 사태 현황1
Ⅱ. 대응경과2
Ⅲ. 1차 대책 신속집행 및 추가 대응방안 ── 3
1. 소비자피해 지원3
2. 판매자피해 지원 4
Ⅳ. <b>제도개선 방향</b> 6
♡. 향후 추진일정 10
【참고】 광역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자금 12

## I. 위메프·티몬 사태 현황

#### □ (경과) 7월 중순부터 정산 지연 → 현재 회생절차로 정산 중지

- 7월 중순부터 위메프·티몬은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대금 미정산
   → 판매자 계약 일방취소, 카드사 환불거부 등 소비자로 피해 확산
- 의메프·티몬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(ARS) 신청(7.29) → 회생 법원은 절차진행 위해 자산 동결\*(7.30), 자율 구조조정 승인(8.2)
  - \* 위메프·티몬의 자의적 자산처분 금지(보전처분) 및 채권동결(포괄적금지) 명령(7.30)

#### □ (피해) 정산지연금 2,783억원(8.1), 소액비중 높으나 추가 피해 우려

-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2,783억원\*(8.1일 기준),
  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%, 상품권 21% 등 구성
  - \* 위메프·티몬의 미정산 금액이며,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191억원(8.1일 기준)
  - 현재까지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**3,395개**로 추산, 업체당 미정산 금액\*의 **약 80%**가 1천만원 이하로 **소액 피해**가 다수(8.1, 금감원)
    - \* 규모별 비중(%): (1천만원 이하) 80 (1천만원~1억원 이하) 10 (1억원 초과) 10 ※ 위메프·티몬·인터파크 판매자 분포의 단순합산 기준(중복 포함)
-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, 상품권·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

#### □ (타 e커머스) 재무건전성, 판매대금 분리 운영 등 모니터링중

- 금번 사태에 따른 e커머스 시장의 거래량 및 판매자 동향 등에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(산업부)
  - \* '24.7월 e커머스 이용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통상 7월이 온라인 유통 비수기인 점 고려시, 큐텐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는 상황
-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여타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, 판매대금 분리운영\* 등 지속 모니터링중
  - \* G마켓·11번가·네이버 등은 판매대금에 대해 에스크로 정산시스템 운영중

## Ⅱ. 대응경과

#### □ 사태 발생 후 즉시 관계부처 TF 구축(7.25) 및 현황점검 실시

- 미정산 사태 발생 직후 관계부처 합동 TF\*(기재부 1차관, 7.25)
   중심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공유 및 대책 협의
  - \* 기재부 1차관 주재 / 공정위·금융위·금감원·산업부·중기부·국조실 등 관계기관 1급
- 위메프·티몬 현장조사\*(공정위·금감원 합동점검반) 및 금융(금융위)· 여행(문체부)·e커머스(산업부)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점검
  - \* 위메프·티몬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여부 점검 등 추진(7.25~7.31)

#### □ 시장혼란 방지 및 긴급 피해지원 위한 1차 대응방안 발표

- \* 위메프·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(7.29)
- 그간 파악된 **피해규모·현황을 기반**으로 정산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·판매자 피해 지원방안 등을 담은 **1차 대책** 발표(7.29)

## □ 추가 대응방안 +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

- \* 위메프·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3차 회의(8.2)
- 신속 지원을 위한 1차 대책 집행상황 점검, 합동점검반 등을
   통해 추가 파악된 피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가 대응방안 협의
- 금번과 같은 정산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주기 축소,
  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 논의

# Ⅲ. 1차 대책 신속집행 및 추가 대응방안 ※ <u>밑줄</u>: 추가과제

- ◇ 1차 대응방안(7.29) 신속 집행과 함께 추가 보완방안 마련
  - (소비자) 금주중 신속히 환불 + 여행·숙박·항공권 분쟁조정 실시
  - (판매자) 8.9일부터 자금지원 신청 개시 + 고용유지 등 지원

## 1 소비자피해 지원

## □ (환불) 금주중 일반상품 환불 완료 목표,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

- (일반상품)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, PG사 통해 <u>금주중</u>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위+금감원
- (상품권·여행) 상품권·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, PG사, 발행사, 여행사와 협조하여 환불 지원 +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<sup>급감원+공정위</sup>
  - 상품권이 정상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사·사용처 협조 요청<sup>급감원+공정위</sup>
- (소액결제) 휴대폰 소액결제(통신과금서비스)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·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과기정통부
- (정보확인) 금감원 점검반을 확대운용하여 환불에 필요한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급감원
- (민원상담)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 위메프·티몬 사태 관련 민원 상담창구 등 운영하며 환불처리 등 피해구제 지속[금감원+공정위] ※ 8.5일 기준 소비자원·금감원 티몬·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12,266건 접수

## □ (조정·회생) 여행·숙박·항공권 분야 분쟁조정절차 다음주 실시

- (분쟁조정) 여행·숙박·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금주중 완료(8.1~8.9)하고 조정절차 신속 진행<sup>공정위</sup>
   ※ 8.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,360건 접수
  - 기타 분야(일반상품 등)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 (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) 해당시 집단분쟁조정 실시 공정위
- (회생절차) 회생절차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참여 지원<sup>공정위</sup>

## 2 판매자피해 지원

#### □ (자금지원) 8.9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+ 필요시 추가 공급 검토

- $^{\circ}$  (긴급경영안정자금) 총 2,000억원( $^{\text{소진-8}}$ 1,700,  $^{\text{종진-8}}$ 300), 기업당 한도/금리  $^{\text{소진-8}}$ 1.5억원 $_{\beta}$ .51% $^{\cdot}$  중진공 $^{\text{8.9일부터}}$  접수 $^{*}$  시작 $^{\text{6기부}}$ 
  - \* 소진공·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·센터 신청 →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
  - <u>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**소진공 자금 공급방식을 대리대출**에서 **직접대출**\* 방식으로 변경 중기부(소진공)</u>
    - \*  $^{(\Pi L)}$ 소진공은 대상 판단 + 금융기관이 대출  $\rightarrow$   $^{(\Lambda L)}$ 소진공이 대상 판단, 심사, 대출 실행
  - 중진공 자금(300억원, 직접대출)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중액방안(지원규모 확대 등) 강구<sup>중기부(중진공)</sup>
- (지자체별 지원) <u>각 지자체內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</u> 활용하여 약 6,000억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(☞ 참고)
- (신보-기은 금융지원) 총 3,000억원,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\*,
   금리 3.9~4.5% → 8.9일부터 접수\*\* 시작, 8.14일경 개시 급용위
  - \* 30억원 이상 피해업체는 일반보증 또는 P-CB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안내
  - \*\* 신보에서 접수 → 지원대상 등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출 실행(기은)
  - <u>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고,</u> 피해규모·집행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**추가확대** 검토 금융위
- (만기연장) 정산지연 기간(5월~)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·
   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 → 8.7일 시행 금융위+증기부
  - \* 해당 대출·보증기관 창구 접수 →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, 신속하게 만기 연장
  - 위메프·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  $\rightarrow$  8.7일 시행 38위
    - \* 선정산대출 취급은행(SC, 국민, 신한) 창구에서 신청

- (지원체계) <u>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하여 중복지원\*을</u> 방지하고,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\*\* 급용위+중기부
  - \* 소진공-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, 신보-기은 협약프로그램
  - \*\* 금감원·정책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지원프로그램, 향후 채무조정 등 안내

#### □ (분야별 맞춤지원) 분야별 피해상황 바탕으로 추가지원 강구

- (관광)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\* 지원 지속(8월~) 문제부
  - \* 총 600억원(대출규모) 한도, 금리 △2.5%~△3%p 지원
  - 여행사 등 지원확대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
     지원을 허용하고,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→2주로 단축
- (농·수산) <u>피해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,</u>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 검토<sup>농식품부+해수부</sup>
  - 「위메프·티몬 사태 수산업 피해 신고센터(수협, 한국수산회)」 해수부 , 「위메프·티몬 사태 농업분야 피해 신고센터(농협중앙회)」 농식품부 운영
- (기술보증) 기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금번 사태로 직·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기업\*에 신규보증 우대지원\*\* 중기부(기보)
  - \* 예) 티몬위메프 플랫폼 개발·유지보수 담당 IT기업, 부가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기업 등
  - \*\* 보증비율 90% 부여, 보증료율 0.3%p 감면 등

## □ (애로해소) 판로확보, 고용유지지원 등 판매업체 경영애로 해소

- (판로지원)
   8월 중순부터 피해업체 他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<sup>\* 중기부</sup>
  - \*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큐텐계열사(티본・위메프 등) 입점소상공인 우선 대상
- (고용유지지원) 피해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\* 추진 고용부
  - \*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(1일 6.6만원 한도)
  - 관련 임금체불 발생시 **대지급금\*, 생계비 융자\*\*** 등 지원 고용부
    - \*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있을 경우 최대 2,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 대신 지급
    - \*\*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연 1.5%로 생계비 융자지원

## Ⅳ. 제도개선 방향

- ◇ 최근 e커머스(유통)가 결제대행(금융)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증가\*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효과적 규율·관리체계가 미비
  - \* 국내 e커머스업체 43개(매출액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) 중 PG 겸영 업체는 9개사 (티몬, 위메프, 롯데쇼핑, 인터파크커머스, SSG닷컴, 지마켓, 11번가, 우아한형제들, 카페24)
  - 일부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·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 발생

#### ①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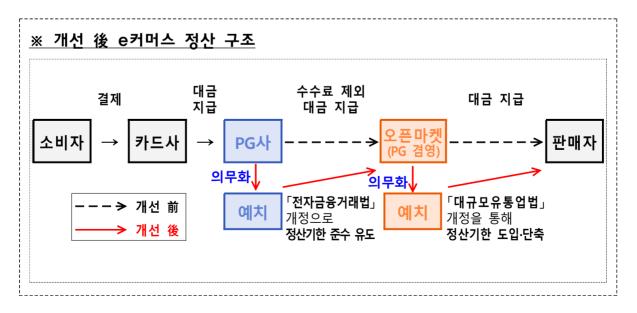
- 이 (현황) e커머스업체(통신판매중개업자), PG社는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· 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, 자율적으로 판매대금 관리
  - 대규모유통업자\*에 대해서는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「대규모 유통업법」 상 정산기한 규정\*\*
    - \*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천m² 이상인 자
    - \*\* 정산기한 : (특약매입·위탁판매) 판매마감일 기준 40일, (직매입) 상품수령일 기준 60일
  - 다만, 일부 e커머스업체들은 마케팅 등 목적으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**정산기한을 짧게** 하거나 **판매대금을 예치**
- (개선방향) e커머스업체, PG社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 하고 제3의 기관·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
  - (정산기한)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\*으로 설정,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규모유통업법
    - \* 온라인 중개업은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비용이 적음
    - ※ **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·전문가 의견**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, **적용 유예기간**을 설정하여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**추후 검토**

-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**PG**社의 경우,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**정산기한**內 대금지급 의무화 및 미지급시 제재<sup>전자금융거래법</sup>
- (대금 별도관리) e커머스업체<sup>대규모유통업법</sup>, PG社<sup>전자금융거래법</sup>가 판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·신탁·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 ※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·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
  -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<sup>대규모유통업법</sup>·PG社<sup>전자금융거래법</sup>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\*
    - \* 판매대금 유용시 e커머스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,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

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

근거법	규율 대상	정산기한	판매대금 별도관리
대규모	• (대규모유통업자)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직접 판매 <sup>*</sup> * <sup>®</sup>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<sup>®</sup> 매장면적 3,000㎡ 이상 점포 사용		-
유통업법	• (e커머스업체 <sup>추가</sup> )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-판매자간 거래 중개	<b>X(→O)</b> ※ 정산기한 신규 도입	X(→0)
전자 금 <del>8</del> 거래법	- (PG社) 지급결제정보의 송·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 대행	<b>X(→O)</b> ※ 정산기한 준수 유도	X(→0)

※ <mark>파란색</mark>: 개선



#### 2 PG社 관리·감독 강화

- (현황)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아 159개의 PG社가 등록되어
   있고,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실효적 감독수단도 미비
  - 등록 대상인 PG社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시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, 협약 미이행시 제재근거 부재
- (개선방향) PG社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\*하고,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, 업무정지,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 마련<sup>전자금융거래법</sup>
  - \*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·물적 요건 강화 등
  -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社\*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·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<sup>외국환거래법</sup>
    - \*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(외국환거래법령)으로 등록한 PG사로,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간 국경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 수행

#### ③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+ 소비자 보호 강화

- (현황)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\*이 발행업체의
  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
  - \*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3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 구입시 사용하는 각종 페이, 포인트 등
- (개선방향)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(이하 '선불업자')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약관법 노 표준약관
  - (발행관리)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\* 시행(9.15)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
    - \* (사용업종) <sup>現</sup>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 → <sup>改</sup>사용업종 요건 삭제 (등록면제) <sup>現</sup>발행잔액 30억원 미만 → <sup>改</sup>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

- 선불충전금 100% 별도관리 의무\*를 도입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 보장
  - \* 선불충전금을 100% 예치·신탁해야 하며, 파산 등의 경우 소비자 우선변제
- (소비자보호)「전자금융거래법」개정사항\*을「표준약관」에 반영
  - \*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의무(제25조의3), 잔액 환급 요건(제19조) 등
  - 현행「약관법」에 따라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**불공정약관 사용**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형벌 부과(2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)

#### ④ 우수 e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

- 정산기한이 짧고,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
   기업 및 우수 e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  - 우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-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등 인센티브 부여
  - 금융회사의 자금거래시 e커머스 회사 등 거래관련업체의 결제 위험도 반영하도록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 실태를 개선 금간원
-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e커머스와 판매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\* 도입 검토 대규모유통업법
  - \* (예시)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, 표준거래계약서 도입,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
- ◇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국회 제출
- ◇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 논의
  - e커머스, 빅테크 등 금융·IT 융합 산업의 경우 혁신적 측면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·감독체계 보완방안 강구
    - \* (예) 금융회사에 준하여 관리감독시 그림자 금융 관리, but 혁신적 성장 저해 우려

# ♡. 향후 추진일정

# □ 부처별 추진계획

조치사항	추진시기	부처·기관	
1. 소비자피해 지원			
▶ 피해금액 환불 지원 및 분쟁조정	계속	금융위금김원공정위	
▶ 상품권 정상사용을 위한 발행사·사용처 협조 요청	계속	금감원·공정위	
▶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협조 요청	'24.8 <b>~</b>	과기정통부	
▶ 금감원 점검반 확대 운 <del>용</del>	'24.8 <b>~</b>	금감원	
▶ 금감원·소비자원 内 민원 상담창구 운영	계속	금감원·공정위	
▶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완료 및 절차 진행	'24.8 <b>~</b>	공정위	
▶ 회생절차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지원	'24.8~	공정위	
2. 판매자피해 지원			
▶ 중진공·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	'24.8~	중기부	
▶ 신보-기은 금융지원 접수 및 개시	'24.8~	금융위	
▶ 기존 대출·보증 최대 1년 만기 연장 시행	'24.8~	금융위·중기부	
▶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시행	'24.8~	금융위	
▶ 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 운영	'24.8~	금융위·중기부	
▶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지원	계속	문체부	
▶ 수산업·농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	'24 <sub>.</sub> 8~	농식품부·해수부	
▶ 기보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	'24 <sub>.</sub> 8~	중기부·기보	
▶ 피해업체 他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	'24 <sub>.</sub> 8~	중기부	
▶ 피해업체 고용지원	'24.8 <b>~</b>	고용부	

# 3. 제도개선 방향

▶ e커머스업체 정산기한 설정 및 제재근거 마련 *「대규모유통업법」 개정안 마련	'24.8	공정위
▶ PG사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및 제재근거 마련 *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마련	'24.8	금융위
▶ e커머스업체 및 PG사 판매대금 별도관리 *「대규모유통업법」,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마련	'24.8	공정위·금융위
▶ PG사 등록요건 강화 및 기준 미충족시 제재근거 마련 *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마련	'24.8	금융위
▶ 외국환업무 취급 PG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등 규제 검토	'24 <u>.</u> 8~	기재부
▶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및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도입 *「전자금융거래법」개정안 시행	9.15일	금융위
▶ 「전자금융거래법」개정사항의「표준약관」반영 * 「표준약관」개정	'24.9	공정위
▶ 우수 e커머스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직권조사 면제 *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(예규)」개정	법 개정 후	공정위
▶ e커머스-판매자간 거래관계 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검토	'24 <sub>.</sub> 8~	공정위

# □ 상담창구 안내

<b>한국소비자원</b> (집단분쟁조정 신청)	<b>☎</b> 1372	금김원 종합지원센터	<b>☎</b> 1332
중진공	<b>☎</b> 1811-3655	소진공	<b>☎</b> 1357
신용보증기금	<b>☎</b> 1588-6565	기업은행	<b>☎</b> 1566-2566
지역신용보증재단	<b>1</b> 588-7365	은행연합회	☎02-3705-5000
<b>수협중앙회</b> (어업인)	<b>☎</b> 02-2240-2251~2	<b>한국수산회</b> (수산물 기공·유통기업)	<b>☎</b> 02-589-4647
농협중앙회	☎02-2080-5114	기술보증기금	<b>☎</b> 1544-1120

# 참 고

# 광역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자금

지자체	대상	지원내용	일정
13	개 광역 지자체	약 6,000억원	
서울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<u>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자금(35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5천만원 - (기간/지원) 5년/3.0% 고정금리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희망동행자금(대환대출, 35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1억원 - (기간/지원) 5년/2.0% 이자차액보전	8월중 공고
부산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<u>지역상생 모두론 PLUS(200억원)</u> - (대출한도) 기업당 8천만원 - (기간/지원) 최대5년/1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<u>긴급경영안정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중기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- (기간/지원) 1년/1.7~2.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인천   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운전자금(2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5억원 - (기간/지원) 1년/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<u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125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1억원 - (기간/지원) 6년, 1.5~2% 이자차액 보전	9월중 공고
광주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<u>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3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세종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(800억원) - (한도) 기업당 7,000만원 - (기간/지원) 2~3년/1.75~2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(2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3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2~3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경기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<u>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</u> (1,000억원: 중기 200, 소상공인 800) - (한도) 중기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- (기간/지원) 중기 3년/ 2% 이지차액 보전 소상공인 5년/ 2.5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충북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</u> (140억원) - (한도) 기업당 3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 3% 고정금리 대출	지원중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<u>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(2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5천만원 또는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- (기간/지원) 5년/3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
지자체	대상	지원내용	일정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소상공인 자금(975억원) - (한도) 기업당 3~5천만원 이내 - (기간/지원) 2년 / 2.5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전북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<u>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최대 3억원 - (기간/지원) 2년, 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e커머스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100억원)</u> - (지원) 운전자금 대출 대환 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 연장(400억원)</u> - (기간/지원) 1년 연장, 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(200억원) - (한도) 기업당 2억원 - (기간/지원) 1년(최대 5년까지 연장) /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전남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전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최대 2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2.5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소상공인 피해기업 특별보증(14억원) - (한도) 기업당 최대 5천만원 - (기간/지원) 2년/3% 이자차액 보전	지원중
경북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운전자금(3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5억원 - (기간/지원) 1년/3% 이자차액 보전	9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<u>소상공인 육성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1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2% 이자차액 보전	9월중 공고
경남	미정산 피해 중소기업	▶ <u>중소기업 정책자금(100억원)</u> - (한도) 기업당 5억원 - (기간/지원) 2년/2% 이자차액 보전	8월중 공고
	미정산 피해 소상공인	▶ 소상공인 육성자금(200억원) - (한도) 기업당 1억원 한도 - (기간/지원) 1년/2.5% 이자차액 보전, 0.5% 보증수수료 감면	8월중 공고

<sup>\*</sup> 울산·강원 등은 피해규모 파악 등을 통해 지원규모 확정 후 자체공고 예정